PORSCHE

위법계약 해지요구서

본인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귀사 앞 위법계약의 요구합니다.

1. 신청인 인적사항

고객명	사업자등록번호 (개인은 생년월일)

2. 대상여신내용

대출내용	계약번호	약정금액	계약일자	만기일자

3. 위법사실의 내용 (중복체크 가능)

항 목	해당여부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3항에 위반한 사실	☐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에 위반한 사실	☐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 사실	☐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1항에 위반한 사실	☐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위반한 사실	☐
(상기 체크하신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바랍니다.)	

4. 통지의 방법 (택1)

☐ 우편 ☐ 전화 ☐ 팩스 ☐ e-mail

본인인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함에 있어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,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8조의 제4항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또한 본인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, 금융회사가 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통지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